연구자가 알아야 할 연구수행의 A to Z

단계		주요내용	관련규정*
과제 신청	공고확인	• 과기정통부/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전체부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제16조 (공고 및 신청)
	신청자격	• 대학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 ·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문 확인) – 신청과제의 총 연구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되어야 함	
		• 연구자는 참여연구원으로 5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로 3과제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 기획 과제, 위탁 과제, 소규모 과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인력양성 및 학술 활동과제는 3책 5공에서 제외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 참여제한자는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제4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환수 기준)
	과제구분 (보안/일반)	• 보안과제는 과제 협약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제출 필수 – 보안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제, 국산화 추진 중 과제 등	제40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신청서 제출	• eRND를 활용한 접수 과정에서 오류/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마감 1~2일 전부터 업로드를 시도하여 오류사항 체크 필요 – 신청완료 후 '기관검토 요청'을 클릭하는 등, 공고문 내용 숙지 필요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세부내용 사업 공고 확인)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협약시 현금/현물 출자 확인 필요 • 공고에 명시된 경우 참여기업은 총수행기간 정부연구비 총액 기준 5억원당 1명 신규채용(만 18~34세) • 협약기간 내 승인없이 이월이 가능한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함	제19조 (협약의 체결)
연구 수행	재단승인 사항	•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국내 파견	제18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0조 (협약의 변경) 제26조 (연구개발비의 변경)
		• 6개월 이상 연구책임자가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장비 신규 구입/변경/취소 – 구입 후 반드시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등록 –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심의 후 ZEUS 등록	
		• 신규채용 중소기업 연구원을 다른 신규 채용연구원으로 변경할 경우	
		• 위탁연구개발비를 계획대비 20% 이상 증액할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 집행하기 위해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 별지 [서식19] 연구개발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 계속 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 직접비로 이월할 경우 – 다년도 협약과제는 협약기간 내에서 승인없이 이월 가능 ※ 단계 연구기간 바뀔 땐 이월 불가 ▶ [재단서식] 이월승인 요청서	
		• 학생인건비 하한선(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보다 낮은 금액 지급시 연구책임자가 요청한 경우(연구책임자 서명)	
	재단보고 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 시 즉시 보고	제20조 (협약의 변경)
		• 위탁과제 협약변경사항은 상위과제 연구책임자(총괄/단위)가 승인 후 보고	
		• 인건비가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 시	
		• 학생인건비 하한선(석사 80만원, 박사 120만원) 보다 낮은 금액 지급 시 학생이 신청한 경우(학생 서명)	
최종 평가		• 원칙적으로 최종보고서는 공개함(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비공개 신청 가능) – 보안과제, 지재권 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시 비공개 신청 후 재단 승인을 통해 비공개 ※ 보안과제 –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그 외 사유 : 1년 6개월 이내 비공개(1회에 한해 1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별지 [서식11]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 연구종료 후 45일 이내에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에 수정 · 보완된 제출용 최종 보고서 제출	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이의 신청		• 선정결과, 성과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대해 결과 공개 후 7일간 이의신청 가능 (단,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이의 신청 불가) ▶ 별지 [서식10] 이의신청서	제47조 (이의신청)
정산		•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실적 보고(통합이지바로 집행 등록, 실적 보고) – 연구기관의 자체회계 감사의견서/집행실적 대비표/현물부담 이행확인서 등 포함	제28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성과		• 연구개발성과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시는 6개월 이내 관련 내용 재단 제출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에 보고 ▶ 별지 [서식13] 기술실시계약보고서 • 기술료를 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재단에 보고 ▶ 별지 [서식15]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보고서	제36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연구 윤리		•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절 금지	제43조 (연구윤리의 준수)
		•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성과 등을 기록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의무 이행 필요	제44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자가 알아야 할 연구비 사용 Tip

비목	세목	주요내용	부당집행 주요사례/조치
직접비	인건비	•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직접비로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로 중복 계상 불가 • 출연연/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전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참여율 130%까지 지급 계상 가능 ※ 당초계획대비 20% 이상 인건비 증액시 재단 보고	• 인건비가 기확보된 기관(대학 등)에서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
	학생 인건비	• 월 인건비 지급기준: 학사 100만원,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이상(참여율 100% 기준) • 학생인건비 하한선 제도 :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20만원 이상 보장 ※ 학생인건비 하한선 예외적용시 별도 신청 필요	• 개인계좌에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연구실 계좌로 이체후 공동관리
	연구시설 · 장비비	• 해당 연구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 · 장비의 구입, 임차, 이전, 설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 · 장비의 개발경비 • 단계(최종)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완료 필요	• 연구계획서상에 없는 연구계획과 무관한 장비 구매 • 단계(최종) 종료 1개월 전 구입 완료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출장비 • 과제 관련 인쇄 · 복사 • 공과금, 수수료(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된 내용에 한함)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식사, 다과, 회의장사용료 등) • 식대(야근식대) •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주변기기 및 범용 소프트웨어(운영체제, 백신 등)의 구입 · 설치 · 임차 경비 ※ 비영리법인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PC구매가 가능하며, 단계(최종)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완료 필요 • 학회 참가비, 원고료, 시험분석/특허정보 분석비 ※ 다년도 협약과제는 차년도 학회비/여비를 당해연도에서 집행 가능(ex. 당해연도 '20.1.1~'20.12.31, 학회 '21.1.11~'21.1.15인 경우 당해연도에서 기안 후 집행 가능)	• 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 종신 학회비 • 해외출장 식비를 경비로 받고, 학회 등에서 식사제공시 식비 차감 필요(중복지원 불가) • 기관 운영비 성격의 비용 집행 • 연구기간 외에 사용하여 청구된 공공요금 집행액 •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비영리법인에서 단계(최종) 종료 1개월 전 PC 구입 완료 • 식대 비목은 야근시 식대이며 평일 점심식대는 아님
	연구 재료비	• 시약 · 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 · 관리비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의 경우 노무비 포함)	• 연구수행범위 대비 시약 과다 구입
	연구 수당	• 대학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현물, 미지급 포함*)의 20%이내 * KAIST, GIST, DGIST, UNIST는 미지급 인건비 제외 • 출연연/특정연구기관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미지급 제외)의 20%이내 • 증액 불가, 인건비 감액시 연구수당 감액 필수	• 기여도 미평가 집행 • 개인별 최대 지급률(총지급액의 70%)을 초과하여 집행 • 연구시작 1개월 이내 지급한 금액 • 매월 정액지급한 경우
	위탁 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 당초계획대비 20% 이상 증액시 재단 보고 사항	• 계상기준대비 초과계상 · 집행 • 사전승인없이 20%이상 초과변경 사용한 경우
간접비		• 비영리기관(간접비율 고시) : 직접비* X 간접비율 이내 • 비영리기관(간접비율 미고시) : 직접비* X 17% 이내 • 영리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자) : 직접비* X 10% 이내 • 영리법인(기타) : 직접비* X 5% 이내 * 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 계획서 대비 초과 집행 • 영리기관(기업 등)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여 지출한 경우 •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경우
		• 간접비 주요 세목 – 지원인력 인건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계상 –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비 ① 대학,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 인건비 총액의 1%~2% (필수) ②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 법인 연구기관 : 인건비 총액의 2% 이하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정밀 정산 대상		• 종료 후 3개월이내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과제 • 이자 부당집행 과제 • 연구비 사용 후 연구비 집행 내역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과제 • 기타 재단 전체 과제의 최소 5%를 임의로 추출하여 정밀정산	

참여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분담금 계상기준	총연구비의 50% 이상, 현금은 부담금액의 15% 이상	총연구비의 40% 이상, 현금은 부담금액의 13% 이상	총연구비의 25% 이상, 현금은 부담금액의 10% 이상
예시(총 연구비 10억 기준)	정부 5억, 기업 5억 (현금 0.75억, 현물 4.25억)	정부 6억, 기업 4억 (현금 0.52억, 현물 3.48억)	정부 7.5억, 기업 2.5억 (현금 0.25억, 현물 2.25억)

*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20년 신규 · 계속과제 참여 중견/중소기업은 부담금 및 현금부담 5%p 완화
(ex. 중견기업 40% 이상 분담, 현금 13% 이상 분담 → 35% 이상 분담, 현금 8% 이상 분담)

※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참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연구현장 지원방안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팀(2020년 6월 기준)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 감염병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 직접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연구활동비 – 수수료] • 과제 수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비를 직접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된 회의, 행사 참여자들의 방역물품 구입비 [연구활동비 – 회의개최비] –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실 운영비(방역물품) 구입비 [연구활동비 – 소모성경비] 또는 [간접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R&D 참여 기업 지원방안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 20년 계속/신규 과제 대상으로 참여기업이 중견 ·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 및 현금 부담 기준을 5%p 완화 – 중견기업 부담금 40%, 현금 부담 13% → 부담금 35%, 현금 부담 8% – 중소기업 부담금 25%, 현금 부담 10% → 부담금 20%, 현금 부담 5%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코로나19로 경영악화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재단에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경우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참여기업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 '20년 예산에 한해, 중견 · 중소기업의 계속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기존 :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코로나19 대응 R&D 지침II	연구비 이월 허용	•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연구비 이월 원칙적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 불가피하게 연구장비 도입이 지연된 경우, 장비 도입기한(종료 2개월) 한시적 예외적 연장(연구기간 연장 병행) ※ 필수 연구장비에 대해 코로나19 '심각' 단계 기간만큼 허용
	간접비 회수 보류	• 직접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으로 보류, 차년도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회수 재검토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 단순 지연(연구장비 수급 등 위기상황 안정화에 따라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인한 지연)시 연구기간 연장 허용 • 연구계획 이행이 어려운 경우(인력 파견 등 연구활동이 장기간 곤란)연구계획 변경 또는 종료 검토
	온라인 플랫폼 활용	• 국제협력, 국내외 교육, 사업화 등 대면 진행이 어려운 연구활동은 온라인 플랫폼 최대한 활용 ※ 국제협력 과제에 한해 출장 취소 등 절감된 연구비를 활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협력환경 구축 허용(필요시 협약변경)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연구실 운영비(손세정제 등) 정산 면제 ※ [연구활동비 – 소모성 경비]로 직접비의 5% 이내 집행가능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에 한해 사용실적보고서 2개월 이내 연장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이전 해당 연구과제의 제출지연사유를 재단으로 공문 회신 – 공문에 포함될 내용 : 연구과제정보, 제출기한일자, 제출완료예정일자, 제출지연사유(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 등 구체적 작성) ※ 정당한 사유일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 및 정밀정산 대상 예외 적용
코로나19 관련 연구현장 FAQ	연장 가능 최대 연구기간	Q. 코로나19로 인해 연구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년 정부연구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舊 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한 정산 대상 과제는 舊 이지바로시스템 운영기간 종료에 따라 최대 '20년 9월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3개월/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연장에 따른 연구비 변경 여부	Q. 연장된 연구기간 동안 추가 연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연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연구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연구기간 연장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Q. 연구기간 연장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출서류 : 공문, 협약변경신청서, (필요시) 증빙서류 ▶ 신청절차 ① 연구기간 연장 신청 공문 송부 ② eRND시스템–연구계획변경–연구기간변경 ※ eRND시스템에 제출서류(공문, 협약변경신청서) 첨부 필수
	기착수한 과제의 기업 부담금 완화 소급 적용 가능 여부	Q.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의 경우 '20년 계속 및 신규과제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기 착수한 과제의 경우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년도 연구비를 지급받고 기 착수한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서 소급하여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상평가 시스템	Q. 화상평가를 실시할 경우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나요? A. 정부통합시스템인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원칙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접속방법은 vc.on–nara.go.kr로 접속 후, 사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코드 번호 입력 시 간편하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상평가 진행 시, 접속 매뉴얼 배포 및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화상평가 진행에 따른 불편함을 적극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온–나라 PC 영상회의'는 MS Windows(7 이상)를 사용하는 PC에만 작동되며, 스마트폰을 통한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코로나19 관련 NRF 정보 참고